

## 스토킹에 관한 고찰

박종렬\*, 이가윤<sup>o</sup>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sup>o</sup>전남대학교 법학과

e-mail: park3822@kwu.ac.kr\*, kt9482@nate.com<sup>o</sup>

## Reflections on stalking

Jong-Ryeol Park\*, Ga-Yun Lee<sup>o</sup>

\*Dept. of Police&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sup>o</sup>Dept. of Law,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 요약 ●

스토킹현상을 신종범죄로 규정하고 스토커 처벌에 관한 내용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에서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됨을 시작으로 1999년에 50개주 및 콜롬비아 특별구까지 입법화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9년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다만 2013년에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미미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다. 현재 제19대 국회에는 스토킹 규제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 도입이 절실하다.

키워드: 스토킹(Stalking), 괴롭힘(Harassing), 경범죄 처벌법(Minor Offense Law)

## I. 서론

스토킹이라고 하면 과거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과 같이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받는 특정계층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근래에 들어 사회가 변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이 되면서 스토킹은 다양해지고 일반화 되어 그 피해자가 우리의 친구, 가족, 연인이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스토킹은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죄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개념규정이 어렵다. 스토킹은 비록 외형적으로 범죄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행위의 상대방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나아가 불안과 공포를 야기 시키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은 합법적인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반복적이고 누적적으로 행해짐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행위의 불법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을 제외하고는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이 도입되기를 바라며 스토킹의 개념 및 사례와 주변 국가의 스토킹 규제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II. 스토킹의 개념 및 사례

### 1. 스토킹의 개념

스토킹의 개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된 것은 없다. 영어에서 ‘stalk’는 “사냥감에 몰래 접근하다; 이성에게 집요하게 추근대다; ...의 뒤를 몰래 밟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stalking’은 ‘stalk’에서 파생되어 명사화된 용어이다. 그리고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스토킹은 “사람을 미행하는 행위”이지만, 개념적인 의미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성가시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점찍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이며 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망상적 행위이다.[1] 그러나 스토킹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일정기간 의도적, 반복적으로 행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포심을 느낄만한 행동으로 특징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방적이고 병적인 행동”[2]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과 상대도 나를 좋아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이성에게 접근해서 상대가 싫어하는 행위를 고의적, 계획적으로 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행위”[3]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 2. 스토킹의 사례

스토킹은 지속적인 피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처음 시작은 단순한 지속적 괴롭힘 등에서부터 점차적으로 강한 범죄행위로 나아가는 문제점이 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과 같다.

### 2.1 유명 연예인 스토킹 피해

2012.6.18. 방송된 MBC ‘기분 좋은날’에서 방송한 연예인 스토킹 피해사례를 보면 배우 소유진이 최근 자신의 집앞에 매일 서성대는 스토키 때문에 공개적으로 CCTV를 설치했으며, 가수 김창완을 스토키한 가해자는 김창완을 11년 동안 쫓아다니며 심리적 압박감과 코뿔을 부러뜨리는 신체적 상해를 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당시 김창완은 ‘창살없는 감옥’이라고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 2.2 소름 끼치도록 따라다녀도...8만원짜리 딱지뿐

2013.8.16. 자 중앙일보 사회면에서는 경범죄로 분류된 스토킹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실효성 논란, 노상방뇨와 같은 수순으로 취급, 처벌 가벼워 스토키 제지 못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전했다.

### 2.3 명문대생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2014.3.12.자 스포츠한국 사회면은 명문대학생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해 놓았으나 범행 3개월 만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는데, 2년 전에도 전 여자친구를 길에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하고 있다.

## III. 외국의 스토킹 규제 입법례

### 1. 미국

미국에서는 1990년 최초로 스토킹 금지법을 캘리포니아주 형법에 도입하였는데, 스토킹을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거나 그 다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족의 안전에 두려움을 줄 의도로 신빙성 있는 위협을 야기하는 지속적인 행위’라고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서 미로소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생기게 되었다.[4] 그렇게 캘리포니아 주의 스토킹 금지법을 시작으로 1999년에 50개주 및 콜롬비아 특별구까지 입법화되었다.

미국 각 주들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다수의 주들은 초범의 경우 1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죄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보호명령위반의 경우 몇몇 주들은 경죄로, 많은 주들은 중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그 이후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몇몇 주들은 경죄로, 과반이 넘는 주들은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5]

### 2. 영국

영국은 1997년 제정된 ‘괴롭힘 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이라는 법률에서 스토킹을 규율하고 있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사람에 대한 괴롭힘과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괴롭힘이란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적어도 두 번 이상 반복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말로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행위는 경죄에 해당되어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폭력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는 중죄로 처벌된다. 따라서 최소한 2회 이상의 일련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공포를 느낄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비교적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6]

### 3. 독일

독일은 제40차 형법 개정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7년 3월 31일부터 발효하였다. 개정된 독일형법 제238조에 따르면 1)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근처로 접근하는 행위, 2) 전기통신수단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그 사람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개인 관련 정보를 남용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물건을 주문, 서비스 신청, 제3자에게 이러한 접촉을 하도록 하는 행위, 4) 다른 사람 또는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또는 자유의 침해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 5) 이에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 등을 집요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생활형성을 중대하게 침해함으로써,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스토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건강침해의 위험이 야기된 경우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진다.[7]

### 4. 일본

일본은 이미 2000년 5월 18일에 ‘스토킹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의 규제대상은 “경고나 금지명령 등의 규제의 대상이 되는 넓은 의미의 스토킹 행위를 ‘따라다니기 등’으로 개념 규정하고, 그 행위 유형으로 8가지를 들고 있으며(제2조 제1항), 그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가중된 스토킹 행위를 ‘스토키 행위’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8]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는 ‘따라다니기 등’의 경우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경찰본부장 등이 가해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공안위원회가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동법 제5조). 가해자가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14조). 또한 스토키 행위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13조).[9]

## IV. 우리나라 스토킹 관련 처벌규정

### 1. 경범죄 처벌법

스토킹과 관련된 행위 내용을 직접 규정한 법률로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범죄 처벌법이 있다. 동 법률 제3조 제41호에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거나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의 벌표에 규정되어 있는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을 보면 제3조 제41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범칙자는 범칙금으로 8만원을 내도록 되어있다.

게다가 경찰청이 일선에 내려 보낸 기준을 보면 명시적으로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면회교제를 요구하는 경우 단순히 1~2회 정도 이상에게 교제를 요구하는 정도는 처벌이 불가하고, 3회 이상 또는 2회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10]

## 2. 형법

스토킹 행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행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처벌 구성요건들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강요죄, 상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 스토킹 행위를 형법상 처벌을 위해서는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단순한 괴롭힘 그 자체로는 이러한 범죄의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규정은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스토킹 중 특히 음란물을 송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음란물을 이용하지 않는 사이버스토킹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3호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규정은 특정 피해자에게 언어나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스토킹의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이라는 요건에 있어서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11]

## V. 결 론

스토커들은 관심과 사랑이라고 할 것이고 주변에 관계없는 이들은 단순히 괴롭히는 행위라 할 것이다. 하지만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영역을 침해 받는 피해자들은 형사법적인 범죄에 의한 피해 이상의 감정을 느낄 것이다. 최근 사회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스토킹은 점차 수법도 다양화 되고 발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스토킹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미비하고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 스토킹 규제에 관한 법안은 계속 발의만 되고 있을 뿐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에도 제19대 국회에서도 2개의 스토킹 규제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루 빨리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이 도입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스토킹을 단순히 괴롭히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중대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Kim, Hak Tai,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alking regulations of Germany and Korea", Journal of European Union Studies, Vol.-No.28, p.182, 2011.
- [2] Kim, Yong Uk, "Legislation of Anti-Stalking Act in Korea", Yonsei law journal, Vol.10 No.2, p.49, 2004.
- [3] Lee, Si Hyeong, Lee, Se Yong, "Modern Society and Stalking", Institute for Study of Rural Societies and Mental Health, p.1, 1998.
- [4] Lee, Won Sang, "A Study on Criminal Penalty of Stalking",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24 No.2, p.158, 2013.
- [5] Park, Sang Yeol, "A Study on Anti-Stalking Laws in Americ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Vol.5 No.1, p737, 2003.
- [6] Lee, Kun Ho, "Stalking Control Strategy and the Limits of the Criminal Law",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Vol.6 No.2, p148, 2004.
- [7] Lee, Won Sang, "A Study on Criminal Penalty of Stalking",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24 No.2, p.159, 2013.
- [8] Lee, Sung Ho, "The Concept and Legal Regulation of Cyberstalking", Justice, Vol.83, p25, 2005.
- [9] Jang, Jeng Beom, Lee, Sang Cheol, "A Study on the need of the Implementation for Criminal Penalty of Stalking",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10 No.2, p225, 2014.
- [10] Lee, Won Sang, "A Study on Criminal Penalty of Stalking",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24 No.2, pp.166~167, 2013.
- [11] Lee, Sung Ho, "The Concept and Legal Regulation of Cyberstalking", Justice, Vol.83, p32, 2005.